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

제105회 창원시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1. 6. 21.)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

창 원 시 의 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6. 21.
건설해양농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6. 1. 창원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6. 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5회 창원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4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1. 6. 21.)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당초 농어촌 발전 및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의 사업 자금 융자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융자 조건 낙후로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해당사업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높이려고 함.

나.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잔여 예산 일반회계 전출

다. 합　　의 : 예산담당관 합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3. 31. ~ 4. 21.) 결과 : 제출 의견 없음

2) 규　제　심　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4) 비 용 추 계 서　: 해당사항 없음

5) 현　행　조　례 : 참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회교)

▣ 개정의 필요성

- 본 폐지조례안은 최초 '91년 구.마산시에서 기금조성 후 「마산시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조례」로 운영되어 오다가 통합으로 폐지되고 2010. 7. 1. 제정되어 현재까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융자조건이 좋지 않아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없으며, 사업의 목적이 동일한 농업발전기금(구.창원과 구.진해 통합)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폐지하여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운영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

-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그 기능이 동일한 농업발전기금과

비교해 볼 때 기능 유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조례로 상위법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다만, 본 조례 폐지 후 남은 자금을 일반회계 전출 시 금융기관과 불부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자금 운영 시 발생한 체납금(137백만원)의 징수 및 회계처리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 · 농업발전기금 비교

(단위 : 백만원/ 2020.12.31기준)

구 분	융자금액 등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대출금리	연체이자
농어민후계 특별회계	자 금 : 1인 1천만원 한도 - 상환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재증보증인 2명 필요	344	-	0.00%	연1%	연15%
농업발전 기금	운영자금 : 1인 3천만원 - 상환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시설자금 : 1인 5천만원 - 상환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4,410	193	4.38%	0%	연8.1~ 8.55%

※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는 2018년, 2019년, 2020년 세출결산 총액이 0원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임

2.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 자금운용

○ 운용금액 : **금545,834,666원('21년 5월말 기준)**

- 융자지원 : 172,324,210원

(미도래원금 33,200,000원, 미도래이자 1,689,000원, 체납액 137,435,210원)

※총16명 : 농업인 11명, 어업인 5명

- 은행예금 : 373,510,456원

(정기예금 300,000,000원, 공금예금 73,510,456원)

4. 질의·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대체토론)요지(주요문제점)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사항, 촉구사항 등) : 없음